

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명생활관(이하 “생활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4.3.28.)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“생활관”이라 함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교내·외 학생기숙시설(유학생기숙사포함)을 말한다. (개정 2014.3.28.)

제3조(운영)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장이 이를 운영 관리한다. (개정 2014.3.28., 2018.8.14.)

제4조(개관 및 모집) ① 생활관은 연중 개관한다. 단, 하계 및 동계방학의 경우 생활관장이 필요에 따라 개관기간을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.(개정 2019.01.29.)
② 생활관 관생은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. 정시모집은 1학기, 2학기, 하계방학, 동계방학으로 연 4회 선발하며 수시모집은 정시모집 외의 기간에 수시로 선발한다.
(개정 2014.3.28., 2018.8.14., 2019.01.29.)

제5조(이용제한) 생활관의 관사 및 시설물 이용은 관생에 한한다. 다만,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관생이 아닌 자에게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. (개정 2014.3.28., 2018.8.14.)

제6조(관생활동) 관생은 학칙과 관생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할 수 있으며 기타 활동사항은 생활관장의 승인에 의한다. (개정 2014.3.28., 2018.8.14.)

제7조(관생수칙 및 내규) ① 생활관장은 관생의 질서있고 명랑한 공동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생수칙 및 내규를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4.3.28., 2018.8.14.)
② 관생수칙 및 내규는 생활하는 전 관생에게 적용되며, 생활관 시설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도 준용한다. (개정 2014.3.28.)

2장 조 칙

제8조(조직) ① 삭제 <2014.3.28.>

② 삭제 (2019.01.29.)

③ 생활관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지도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4.3.28.)

제9조(임무) ① 생활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생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. (개정 2014.3.28., 2018.8.14.)

② 직원 및 지도조교는 생활관장을 보좌하여 관생을 지도한다. (개정 2014.3.28., 2018.8.14.)

3장 운영위원회

제10조(구성 및 회의) ①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4.3.28.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고 위원은 생활관지원팀장, 기획재정팀장, 시설관리팀장, 입학지원팀장과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생활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 한다. (개정 2009.3.1, 2011.4.18, 2012.8.1, 2014.3.28., 2018.8.14., 2019.10.1.)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간사는 생활관지원팀 사무직원으로 한다. (개정 2014.3.28.)

⑤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 (개정 2014.3.28.)

제11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생활관 규정의 개폐
2. 입관 및 퇴관에 관한 중요사항
3. 기타 생활관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

제4장 입관 및 퇴관

제12조(입관자격) 생활관에 입관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 재학생에 한한다. 다만, 외국인(학생 및 교수), 교직원 및 외부인의 입관자격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4.3.28., 2018.8.14., 2019.01.29.)

제13조(입관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할 수 없다. (개정 2014.3.28., 2018.8.14.)

1.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2. 생활관에서 퇴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3. 전염성 질환 환자 또는 보균자

4. 휴학 중인 자
5.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4조(관생선발) ① 생활관에 입관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선발기간 중에 입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3.28., 2018.8.14.)
② 입관지원자가 관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생선발기준에 의한다.
③ 관생선발기준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4.3.28., 2018.8.14.)

제15조(입관등록) 관생으로서 입관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관비를 납부한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입관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6조(퇴관처분) 생활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퇴관처분할 수 있다. (개정 2014.3.28., 2018.8.14.)

1. 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
2. 생활관 납부금을 체납한 경우
3.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할 경우
4. 기타 공동생활 등을 영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경우

제17조(퇴관신고) 관생이 퇴관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직원으로부터 공용 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은 후 퇴관하여야 하며, 손·망설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.(개정 2009.3.1.)

제18조(입관 허가 기간) 입관허가 기간은 생활관이 지정하는 체류기간에 한하며, 신규 입관생 모집 시 다시 입관허가를 얻어야 한다. (개정 2009.3.1., 2019.01.29.)

5장 경비

제19조(경비부담) 관생 및 외부인의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19.01.29.)

제20조(생활관비) ①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식비로 구성되며 비용은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9.01.29.)
② 삭제 (2019.01.29)
③ 수납된 생활관비는 중도퇴관 시 환불하며, 환불 기준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09.3.1., 2019.01.29.)

제21조(생활관비 납기) 생활관비는 모집기간 별로 징수하고 그 납부기간은 생활관장이 정한다. (개정 2009.3.1., 2014.3.28., 2018.8.14., 2019.01.29.)

6장 관생자치회

제22조(구성 및 기능) ① 생활관 관생들에게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며 공동생활을 통하여 협동과 단결 그리고 준법정신과 자율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09.3.1.)

② 관생자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생자치회 회칙은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 (개정 2009.3.1, 2014.3.28., 2018.8.14.)

부 칙

본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부터 제7조까지, 제9조, 제10조 제2항 및 제4항, 제12조, 제13조 제5호, 제14조 제3항, 제16조, 제21조, 제22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